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356 |
|----------|------|

2023년 12월 1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6일, 우형찬 의원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‘자살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서울시의 학생자살예방 관련 조례는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는 물론 사후지원 협력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실정임.

- 이에 학생자살 이후 가족, 주위학생, 교직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,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, 사전 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자살 예방계획상 사후 대응체계 및 홍보, 캠페인 구축에 대한 예방계획 조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에 있어 상담 서비스 및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다. 학생자살 예방계획에서 규정한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을 조항 명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).
- 라.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 교육감의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1조).
- 마.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2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56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살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¹⁾ 코로나19 이후 고립감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4월에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‘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(2023~2027년, 관계부처 합동)’을 발표하였으며,

서울시교육청은 금년 2월에 수립한 ‘학생자살예방 추진 계획’에 따라 학생 대상 생명존중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서울시 관내 자살 학생은 10

1) 보도자료: 한국 자살률, OECD 1위...2위와도 압도적 격차 '쏟쓸'(머니투데이, 2023.5.28.)

월 기준 33명으로 이미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.

[표-1]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생 자살 현황

| 연도 학교급 유형별 | 2021 | | | | 2022 | | | | 2023(10월 말)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|----|----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| 초 | 중 | 고 | 계 | 초 | 중 | 고 | 계 | 초 | 중 | 고 | 계 |
| 우울증 | 0 | 0 | 6 | 6 | 0 | 1 | 6 | 7 | 0 | 2 | 9 | 11 |
| 가정문제 | 1 | 2 | 2 | 5 | 0 | 3 | 3 | 6 | 0 | 5 | 3 | 8 |
| 성적문제 | 0 | 0 | 3 | 3 | 0 | 2 | 4 | 6 | 0 | 0 | 1 | 1 |
| 이성문제 | 0 | 2 | 0 | 2 | 0 | 0 | 1 | 1 | 0 | 1 | 0 | 1 |
| 원인불명 | 0 | 1 | 6 | 7 | 0 | 1 | 7 | 8 | 1 | 5 | 3 | 9 |
| 기타 | 0 | 1 | 4 | 5 | 0 | 1 | 1 | 2 | 0 | 2 | 1 | 3 |
| 합 계 | 1 | 6 | 21 | 28 | 0 | 8 | 22 | 30 | 1 | 15 | 17 | 33 |

- 이와 같이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동 개정조례안이 사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육환경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나. 조문별 검토

1) 학생자살 예방계획 등(안 제4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·시행하는 학생 자살예방 계획에 ‘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’, 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하면 남은 구성원은 심리적 혼란, 불안, 우울, 불면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바,²⁾

2) 보도자료: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한다(세계타임즈, 2023.5.11.)

안 제4조제6호가 사후 대응체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또 다른 자살 위기를 예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고, 안 제4조제7호 또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³⁾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)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(안 제8조)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생자살예방 교육 담당 교사에게 상담 서비스,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및 대처방안과 대화법 등 게이트 키퍼⁴⁾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

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담당 교사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)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(안 제9조)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9조에서는 제목 ‘가족 등에 대한 지원’ 을 ‘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’ 으로 수정하였는바 동조는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

3) 보도자료: 여주시, 시민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자살 감소 이끌었다(경기헤드라인, 2023.12.1.)

4)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,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·지원하는 사람(네이버 지식백과).

향 완화, 생활의 평온 유지를 위한 배려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, 주위학생,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이는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과 안정을 통해 또 다른 자살 사안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)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(안 제11조)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 에 대한 검토

-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·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안 제12조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등 학생 주도의 온·오프라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홍보·캠페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자살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5379, 2023. 10. 27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

7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

제8조제2항 중 “수” 를 “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” 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가족 등에 대한 지원)” 을 “(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, 주위학생,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,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4조(학생자살 예방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</u></p> <p>7. <u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</u> <u>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</u></p> <p>8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(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) ① (생략)</p> <p>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| <p>제8조(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---.</u></p> |
| <p>제9조(<u>가족 등에 대한 지원</u>) ① (생략)</p> | <p>제9조(<u>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|

<신 설>

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 · 제12조 (생 략)

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, 주위학생,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1조(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